

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8-17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이유

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인력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신설함(안 제2조제4호, 별표 4)
 -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하여 월 500,000원 지급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제14조, 별표 9

나. 예산조치: '18년 예산 4,500천원 확보

(1명*500천원*9개월=4,500천원)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개혁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'17. 12. 27.~'18. 1. 16.

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: 미첨부사유서

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
(6) 도내 개정완료(1): 의령군

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별표 9 제2호에 따라 「의료법」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”를 “별표 9 제2호가목·다목에 따른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전임 계약직공무원”을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수의직렬공무원: 별표 4의 지급구분표

제3조 중 “영 별표 9 제7호라목”을 “영 별표 9 제8호라목”으로, “별표 4”를 “별표 5”로 한다.

별표 1과 별표 2의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1]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(제2조 관련)

[별표 2]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(제2조 관련)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,

별표 4를 별표 5로 하고,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의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의료업무수당)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<u>별표 9 제2호에 따라 「의료법」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일반직공무원인 의사: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.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: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. 보건진료직렬공무원: 별표 3의 지급구분표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 <p>제3조(장려수당) 영 <u>별표 9 제7호라목</u>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<u>별표 4</u>와 같다.</p>	<p>제2조(의료업무수당)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<u>별표 9 제2호가목·다목에 따른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----- 2. <u>일반임기제공무원</u>----- ----- 3. ----- ----- 4. <u>수의직렬공무원: 별표 4의 지급구분표</u> <p>제3조(장려수당) 영 <u>별표 9 제8호라목</u>----- ----- -----<u>별표 5</u>-----</p>

[별표 4] <신 설>

수의직렬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(제2조 관련)

지 급 대 상	지 급 액	비 고
수의직렬공무원	월 500,000원	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

[별표 3]

보건진료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(제2조 관련)

지 급 대 상	지 급 액	비 고
보건진료직렬공무원	월 250,000원	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

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제2조(의료업무수당)제4호 및 별표 4
- 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월 500,000원 지급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수의직렬공무원 1명*500천원*12개월= 연 6백만원

4. 작 성 자

행 정 과 장 이화기